

경운대학교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의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, 필요시 외부인원을 임명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④ 입학전형의 공정관리에 필요한 특별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전문팀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3조(임기)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결원으로 인하여 신규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단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한다.

1. 입학전형 부정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심의
2. 입학전형업무의 감시 및 통제
3. 입학전형의 감사 및 입학전형의 부정방지과 관련된 모든 업무
4. 기타 입학전형공정관리와 관련된 사항

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되, 필요에 따라 사무직원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수당)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처에서 지원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